

세로로 도약 **잇진** 동구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

Daegu Donggu Ombudsman of management state report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새로운 도약 위한 동구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ombudsman 운영상황보고서

Daegu Donggu Ombudsman of management state report



대구광역시 동구 [오부즈만]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발 간 사

구민들의 고충민원 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2019년 7월 출범한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이 벌써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옴부즈만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기관·국민 간 갈등
중재 및 해결을 위해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서, 높아진 시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수요와 권익구제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 한 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옴부즈만의 활동과
제도의 홍보에 한계가 있었지만 옴부즈만을 믿고 찾아주신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옴부즈만 위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며
구민과의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이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인 동구 옴부즈만이지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공무원 여러분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구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적극행정을 실천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길 희망하며, 옴부즈만도 동구가 구민 중심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 옴부즈만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봉사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2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대표옴부즈만 박 영 홍

I. 옴부즈만 운영개요

-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1
-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3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 1. 고충민원 접수·처리현황 11
- 2. 고충민원 접수내역 15

III. 주요 처리사례

- 1. 의견표명 33
- 2. 시정권고 60
- 3. 합의조정 68

IV.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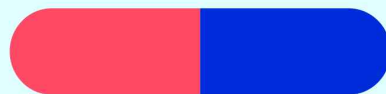
- 1. 옴부즈만 홍보실적 73
- 2. 옴부즈만 활동사진 80

V.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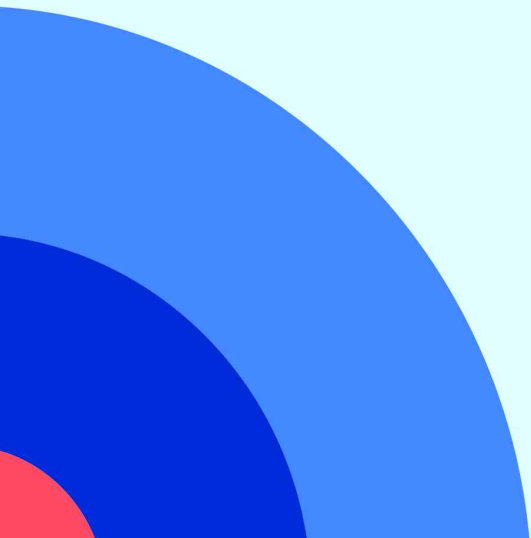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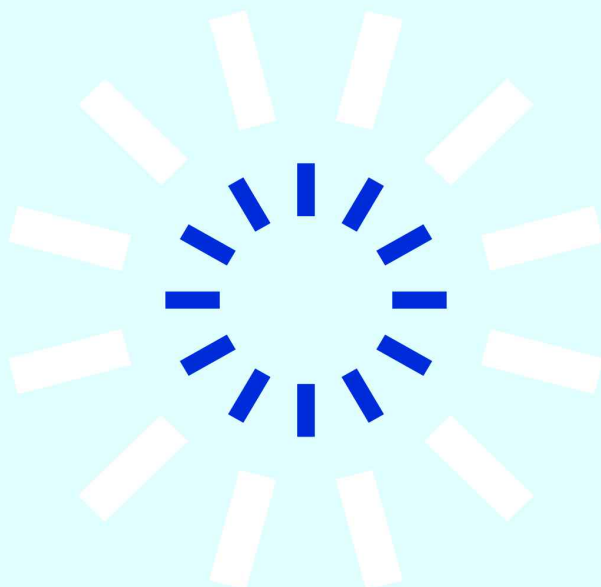
-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5
- 2.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90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 I. 옴부즈만 운영개요



1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옴부즈만(Ombudsman) 개념

옴부즈만(Ombudsman)이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비사법적 시민권의 보호제도

□ 도입배경

- 행정의 복잡·다변화로 주민의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의 집단화 양상 및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 일부민원에 의한 행정력 손실이 크고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불신과 불만사항은 해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 중립적인 견지에서 고충민원을 처리(조사, 합의권고 및 조정 역할)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 간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동일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 방지에도 일조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 설치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추진경과

- 2018. 10. 18.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2018. 11. 26.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2019. 1. 30.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9. 7.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위원 위촉
- 2019. 7. 15.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출범
- 2020. 3. 18. 2019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 2021. 3.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공표 예정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 구성 및 임기

○ 구 성 : 3명

- 대표 옴부즈만 1명, 옴부즈만 2명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라
3명 이내 구성

○ 임 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궐위에 의해 새로이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이 개시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

○ 운영형태 : 매주 월,수,금 09:30 ~ 17:30 / 1일 1명 근무

※ 매월 둘째, 넷째주 합동근무 (월,수,금 중 1일)

〈옴부즈만의 자격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 자격 5년 이상 경력자
- ❖ 사회적 신망과 행정 식견 및 경험자로서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 옴부즈만 소개

구 분	성 명		주 요 경 력
대 표 옴부즈만		박 영 홍	• 現 경북대학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전략연구위원장) • 前 대구 야구장 건립추진단장 • 前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창조국장
위 원		신 춘 복	• 前 여성가족부 여성권익증진팀 담당 • 前 경상북도 자치행정과 담당 • 前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위 원		손 병 찬	• 前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 근무 • 前 대구광역시 도시디자인과 담당 • 前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성사업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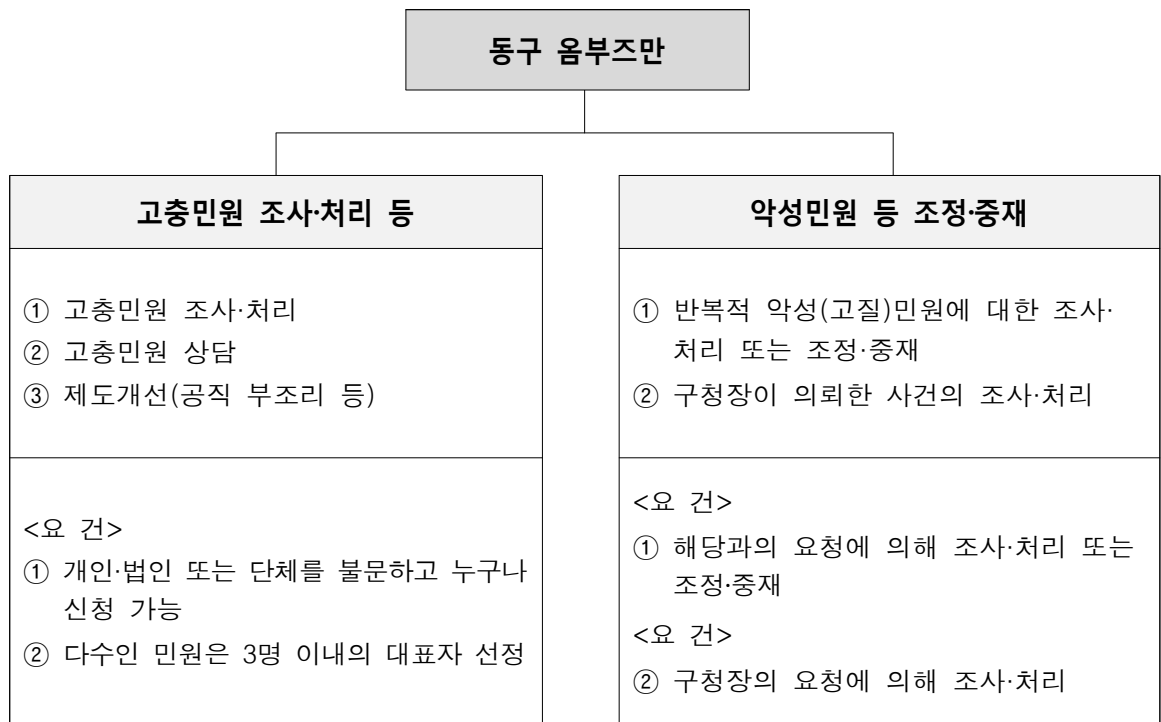
□ 직무 및 권한

-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이 아닌 사항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옴부즈만 민원처리절차



□ 운영방식

-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옴부즈만의 조치(결정) 유형>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 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조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의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

❖ 심의안내

신청인의 민원사항과 관련한 행정절차나 제도를 설명하거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가. 운영상황 보고

-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나. 운영상황 공표

- 매년 12월 말까지의 운영상황을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

- 공표 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

- 공표대상

- ①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 ②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 ③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 ④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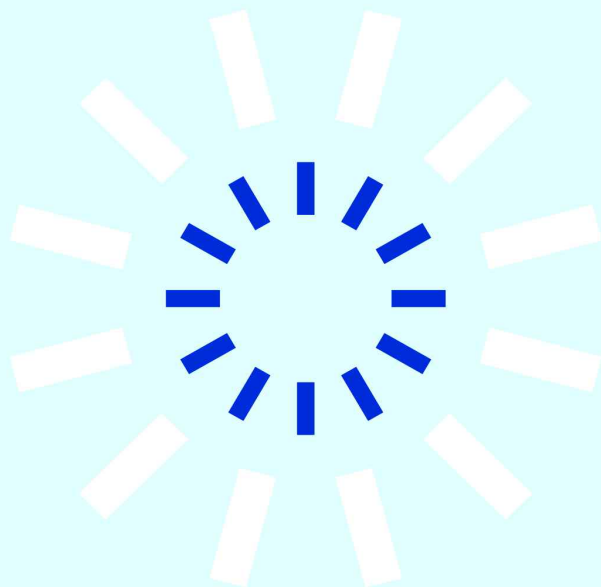
※ 대구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 총괄표

(2020. 1. ~ 12.)

합계	접수건수(단위 :건)		처리기간(단위 : 일)	
	전화	방 문	최대	최소
61	2	59	19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의 계산은 첫날(접수일)을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에서 제외

□ 처리 현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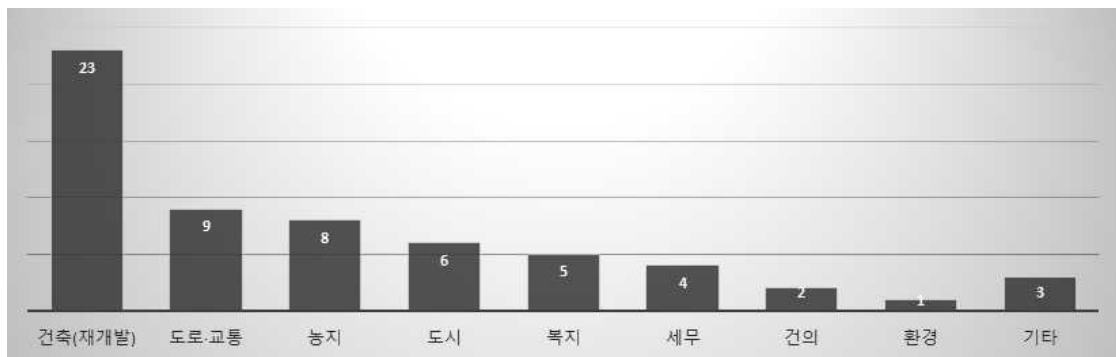
(단위 : 건)

구분 건수	합계	직접 조사	이첩	취하	상담 완료	비고
61	61	10	15	-	36	

□ 처리 분야별

(단위 : 건)

분야 건수	건축 (재개발 등)	도로· 교통	농지	도시	복지	세무	환경	건의	기타
61	23	9	8	6	5	4	1	2	3



□ 처리내용 요약

연번	접수일	제 목	비고
1	1. 8.	건축법 적용 관련 이의제기	상담
2	1. 10.	상가 앞 노면주차장 삭제 요청	신청
3	1. 15.	공공건축물 한옥건축 양식 장려	상담
4	1. 17.	농가 창고 신축 위한 농지전용 허가요청	신청
5	1. 22.	건축 가능토록 주차장부지 일부 매각요청	신청
6	1. 29.	○○○○○○구역 관련법 적용 질의	상담
7	2. 12.	노점상단속 탄력적 운용(형평성 문제 제기)	신청
8	2. 12	마을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진정	신청
9	2. 13.	○○○타운 개발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신청
10	3. 25.	농지전용 관련 상담	상담
11	4. 3.	긴급생계비 지급 관련 문의	상담
12	4. 8.	상가밀집 지역 주차공간부족 및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시설로 인한 문제 해결 요망	신청
13	4. 17.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조치 요망	신청
14	4. 29.	○○동 건축허가 관련(소음, 분진발생 예상으로 인한 조치 요망)	신청
15	5. 6.	아파트 관리비 부당청구 이의제기 및 조사요청	신청
16	5. 13.	주거지역 도시계획 종상향 건의	상담
17	5. 15.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전용 문제	신청
18	5. 20.	생계자금 지급 관련 문의	상담
19	5. 25.	○○동 □□□□지구 분양가 관련 질의	상담
20	6. 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질의	상담

연번	접수일	제 목	비고
21	6. 17.	인근농지 무단 배수로 인한 자영농지의 배수피해 해결	신청
22	6. 19.	맨홀파손 및 주변지하도 사고위험	신청
23	6. 22.	장기 자동차세 체납 감면 요청	신청
24	6. 24.	동구○○ 정비구역 ○○ 위원회 승인기준 충족 확인요망	신청
25	6. 24.	○○동 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터 철수 요망	상담
26	6. 26.	신축 중인 빌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문제 해결 요망	신청
27	7. 6.	지역단기일자리사업 설명 및 안내	상담
28	7. 13.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관련 고충사항	신청
29	7. 15.	○○○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	신청
30	7. 15.	도로 맨홀 파손 및 침하 복구 요청	상담
31	7. 22	금호강 ○○길 가로등 보수요망	상담
32	7. 29	○○동 소재 농지에 대한 인접농지 피해	상담
33	8. 21.	아파트관리주체선정관련 입주자대표회장 횡포 대책 건의	상담
34	7. 29.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대지경계 측량요청	신청
35	8. 24.	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 관련	상담
36	8. 28.	집수리 후 하자보수 미이행	상담
37	8. 28.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 지원 요청	상담
38	8. 28.	비포장 소방도로 포장 요망	신청
39	8. 28.	○○교 현위치 설치 요청	신청
40	8. 31.	주택 개축 준공검사 관련 애로 사항 해결	신청

II. 읍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제 목	비고
41	9. 2.	○○○시설 신축허가 관련 증제	신청
42	9. 2.	택배차량 충돌으로 건물 파손 피해보상 관련	상담
43	9. 2.	빌라 진출입 보차도(경계석) 확장 요망	상담
44	9. 2.	국유지(구거) 불하 관련 문의	상담
45	9. 4.	희망지원금 지급방법 이의신청(제기)	상담
46	9. 9.	공사장 소음피해 조치요망	상담
47	9. 16.	주택가 내 하수구 노후로 인한 악취고충 해소 요망	신청
48	9. 18.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망	상담
49	9. 18.	도로용도폐지 및 불법쓰레기 방치 조치 요망	상담
50	9. 25.	○○재정비촉진 △구역 공사로 인한 소음피해 해결 요망	상담
51	9. 25.	△△△△도로공사 신설발파로 인한 피해 해결 요망 (○○○○○○○~□□동 연결도로 공사로 인접지역 주민피해 대책 요망)	상담
52	10. 14.	화재로 반파된 폐고가 조치 요망	상담
53	10. 26.	아파트관리비 공동전기요금 등 과다 징수 개선요구	상담
54	11.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성토 지원 요구	상담
55	11. 13.	농사용 창고 신축 관련	상담
56	11. 20.	○○○구역 ○○○아파트 오수처리 관련	상담
57	11. 23.	아파트 세대내 안방 화장실 벽체 타일 균열과 문틀 뒤틀림 해소	상담
58	12. 4.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발급 관련	신청
59	12. 7.	인접 빌라 신축에 따른 피해 조치 결과 확인	상담
60	12. 16.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상담
61	12. 30.	취득세 납부 이의제기(구제요청)	상담

2

고충민원 접수내역

1) 옴부즈만 직접 조사·처리 내역: 10건

□ 조치(결정) 유형별

(단위 : 건)

합계	조 사 결 정							진행중
	의견표명	시정권고	합의조정	제도개선	기각	각하	심의안내	
10	5	2	2	-	-	-	1	-

□ 세부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고
1	4. 17.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조치 요망 【대구 동구 서○○(4일)】	- 동구 □□동 △△△-△ 외 3필지 ○○○시설 신축건물 진출입을 위한 □□동 ◇◇◇-◇번지 수도용지 사용과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확인 결과 위 부지에는 현재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어 인근 식당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도시계획도로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도로부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인을 위한 배타적권리인 독점적 사용허가는 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여러 사람이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 - □□동 ◇◇◇-◇번지 수도용지를 현재와 같이 사용하면 신축건물 진출입이 가능하므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고충민원을 수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우편 회신	의견 표명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고
2	4. 29.	- □□동 △△△△-△번지 외 2필지에 신축공사 및 향후 제조업소 운영 시 기계소음 및 분진발생 피해가 예상되므로 조치요망 【대구 동구 김○○(16일)】	- 현장 방문 조사 시 법적 기준은 충족됨을 확인 하였지만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줄 것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으며, - 향후 제조업소 운영 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의 문제에 대하여도 주민들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조치할 것을 통보 - 부서 요청에 따라 건축사측에서 신축공사 민원에 대한 조치 계획서 제출하였으며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 실시 예정	의견 표명
3	5. 15.	-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전용 문제 【대구 수성구 정○○(6일)】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농지전용이 의제처리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허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건축법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이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 농지전용 불허가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의견 표명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고
4	6. 17.	- 인근 농지 무단 배수로 인한 자영농지의 배수피해 관련 인근 농지 경작자들과 협의 약속한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아 지속적 피해가 발생하므로 조치요망 【대구 동구 최○○(19일)】	- □□동 △△△-△번지 제방 일부 멸실로 인해 인접지인 자신의 농지(□□동 ◇◇◇번지)로 우천시 물이 유입되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멸실 제방의 원상복구 요청. 읍부즈만이 인접 농지소유자와 재협의를 통해 이행을 촉구하였고 또한 재발방지 약속함 - 아울러 인접 농지에 대한 배수 문제 등 영농과정에서 신청인이 일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수인의 범위 내에서 인접 농가와 상부상조하는 전통 영농미덕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합의·조정	합의·조정
5	6. 26.	- □□동 △△△-△△번지에 신축 중인 빌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 호소 【대구 동구 김○○(12일)】	- 빌라 신축에 따른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지급 약속한 현장 관리인의 공사 포기 및 건축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중재 및 합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신축 건물의 경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 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피해 보상을 받거나, 현 건축주와 손해 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외부비계 및 부직포 등으로 인한 안전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적법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보 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의견 표명

II. 읍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고
6	7. 13.	- 건축물 용도 변경에 따른 재산세 감면 관련 【대구 동구 백○○ (1일)】	- 관계부서 확인결과 △△△-△△소재 3층 건물 중 당초 사무실 용도였던 2층은 현지 실사를 통해 주택으로 용도가 이미 변경되어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으며, 지하 다방 또한 현지 실사를 통해 창고 용도로 현상 부과하여 재산세가 감면 부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이웃에 위치한 주택들과 비교하여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된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는 인접 건물의 용도, 재질, 규모, 건축 자재 등을 상세히 비교, 검토하여 확인 되어야함을 안내하고 연도별 재산세 부과 내역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심의 안내
7	7. 29.	- □□동 △△△-△번지선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대지경계 측량 수수료 요청 【대구 동구 문○○(18일)】	- 경계측량 수수료 요구에 대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수수료 등)의 측량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을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민원에 대하여도 현행 법령상 손해배상 및 측량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계획 시설결정(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폐지)에 따른 대지경계 중복 측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법령 개정 건의 또는 시혜적 행정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시정 권고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 (신청인 및 처리기간)	처리결과	비고
8	8. 28.	- 신설하는 ○○교 교량 현위치 설치 요청 【대구 동구 이○○(9일)】	- 홍수빈도 및 계획홍수량 분석 및 검토 결과 하천 통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하천 건너편 기존 교량 접속부 하천부지를 약 2m 정도 절토하여 통수능을 확보 하거나, 교량부분 하도 일부를 낮추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공사기간이 길어져 가설교량이 필요할 경우 ○○교 상류 100m 지점의 보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 이므로 기존 위치에 ○○교를 신설하도록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청인 에게 우편 회신	시정 권고
9	9. 2.	- □□동 △△△-△번지 ○○○○ 시설 신축허가 관련 고충민원 당사자 간 중재 요청 【대구 동구 건축주택과(6일)】	- □□동 △△△-△번지 상의 ○○○ 시설(○○○○시설) 신축허가 관련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주가 제시한 지역발전 방안 등을 토대로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으며 당사자 간 화약서 서명 날인 후 고충민원 합의·조정 통보	합의 조정
10	12. 4.	- □□동 △△△번지 토지 매매를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요청 【대구 동구 임○○(15일)】.	-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설정 되어 있지 않은 공유토지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농지 매수 시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에 농사용 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철거 하겠다고 하였더라도 당초 설치한 사람이 농사용으로 다시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철거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사료됨 -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농사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비닐하우스 철거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의견 표명

2) 부서 이첩 처리내역 : 15건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수용여부)
1	1. 10.	- 상가 앞 노면주차장 삭제요청 【대구 동구 이○○】	- ○○○○○아파트 상가 앞 노상주차장 삭제의 경우 주(정)차금지구간 지정을 고려하여 7면 삭제하였음 - 추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보행자 길(보도) 없이 노상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차면 삭제에 따른 불법주 (정)차 근절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대구지방 경찰청과 협의 후 주차금지구간으로 지정되어 조치되었음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교통과 (수용)
2	1. 17.	- 농가 창고 신축 위한 농지전용 허가요청 【대구 북구 황○○】	- 현장 여건 조사 결과 대상지는 대구 ○○도시와 경계지역으로서 주변에 농지가 산재하여 있고, 일부 농지에는 현재 농사용 창고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상기 민원인의 농지 전용으로 난개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관계 법령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농지법 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협의를 금지 요건·허가기준에 부합 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조사결과서와 함께 소관부서로 이첩 통보 - □□동 △△번지(지목:전)는 자연녹지 이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로 농지 전용 신고 신청서 및 서류일체 접수 후 심사결과에 따라 농지전용 여부가 결정됨, 또한 농사용 창고는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또는 그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물을 저장하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해 150㎡ 이하로 허가 시 설치 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경제지원과 도시과 (관련규정 안내)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수용여부)
3	1. 22.	- 진입로 확장을 위한 공용 주차장 부지 일부 매각 요청 【대구 북구 서○○】	- □□동 △△△-△번지 일부 매각 요청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매각 또는 사권 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으로 매각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교통과 (불수용)
4	2. 12.	- 노점상 단속의 탄력적 운용 (형평성 문제 제기) 【대구 동구 우○○】	- ◎◎시장 건너편 ◇◇앞에서 이루어지는 노점행위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는 행위로 수차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향후 「도로법」 제73조 (원상회복)제2항에 따른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 될 수 있음을 안내 하였으나, 민원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하여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하는 선에서 단속을 자제하는 것으로 합의	도시과 (수용)
5	2. 12.	- □□마을 도로 원상회복에 대한 진정 【대구 동구 황보○○】	- □□동 △△△△번지 도로의 개인에 의한 무단 점령, 훼손 여부 확인을 위해 읍부즈만과 관계부서 담당자가 현장 방문 하였으며 측량 후 도로 불법 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도로 부지 경계에 있는 시설물 제거	건설과 (수용)
6	2. 13	- □□□□□ 개발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및 인근 조명강화 【대구 동구 장○○】	- 영업 손실 보상 관련 사항은 △△△△공사에 검토를 위해 공문 발송 - 인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상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 측의 자체식당 미설치 및 인근식당 이용 행정지도 및 협조 요청 - 현장 확인 후 미점등 가로등에 대한 수리 완료 및 가림막이 있는 보도에 대한 조명강화 부 분은 개발주체인 대구 도시공 사와 협의 후 임시조명등을 하 는 문제 등 적극 검토	경제정책과 (수용)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수용여부)
7	4. 8.	- 도시 상가밀집 지역 주차 공간부족 및 집 앞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로 인한 문제 【대구 동구 최○○】	- 공문과 언론보도 등을 통해 ○○ 도시 일대 공공기관과 학교에 주차장 개방공유사업에 참여할 것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기관(□ □관리원)과 개방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 - 재활용 쓰레기수거차량 운행 횟수를 두 배로 늘려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교통과 환경녹색과 (수용)
8	5. 6.	- ○○○○아파트 관리비 부당 청구 이의제기 및 조사요청 【대구 동구 김○○】	-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관리비 납부 기한 및 회계 관련 규약 확인 후 민원인에게 우편 회신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주자 등에게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도록 민원 사항 통보	건축주택과 (수용)
9	6. 19.	- 맨홀과손 및 주변 침하로 통행 불편 및 사고위험 【대구 동구 김○○】	- 도면확인 결과, 사유지 내의 개인 배수 설비로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소유자의 (설치자)가 하여야 하나, - 해당도로는 주변을 통행하는 구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바,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할 시 통행에 불편 및 사고위험이 있는 맨홀부분은 부분 보수 검토가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건설과 (수용)
10	6. 22.	- 장기 자동차세 체납 감면 요청 【대구 동구 김○○】	- 자동차세 체납(○○여만원)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지방세관계법에 의한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불가능함. 해당 차량에 대한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부금액 납부 시 영치된 번호판의 반환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세무2과 (불수용)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수용여부)
11	6. 24.	- 동구○○○○구역 ○○위원회 승인기준 충족 확인요망 【대구동구 조○○】	- 관계부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검토 결과 철회자 숫자를 제외하면 법적 동의율에 미달 되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일까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로, - 관계부서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 이송 및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관련규정 안내)
12	7. 15.	- ○○○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의 【대구 수성구 박○○】	- 역사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출입구 측면 구간의 인도 폭이 좁아 에스 스컬레이터(폭3.3m)를 설치할 경우 최소 보행 폭(2m)을 확보 할 수 없어 부득이 건축선의 후퇴 구간이 있는 #4출입구 앞 구간에만 설치하였으며, - 향후 반대편인 #2, #3 출입구 주변에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해 서는 주변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 건축선 후퇴 요인이 발생하고 승강기 설치 예산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간에 설치하지 못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및 이해 설득	대구도시 철도공사 (불수용)
13	8. 28.	- 비포장 소방도로 포장 요망 【대구동구 도○○】	- 관계부서에서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소유자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설득과 이해를 통하여 사용승낙 받도록 조치 요망 - 현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사유지 사용승낙서를 징구 중에 있으며,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토지 사용승낙서 함께 제출 시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추진 예정	건설과 (수용)

II. 읍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수용여부)
14	8. 31.	- 주택 개축 준공검사 관련 애로 사항 해결 【대구 동구 김○○】	- □□동 △△△, ◇◇◇번지 각각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 내 개축 신고를 득하였으며,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은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사용승인이 가능하며, 두 필지의 건축물을 연결하여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중전 건축물의 규모 이상이므로 신축에 해당하여 해당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신청인에게 우편 회신	건축주택과 (관련규정 안내)
15	9. 16.	- 주택가 내 하수구 노후로 인한 악취고충 해소 요망 【대구 동구 김○○】	- 현장조사 결과 하수관로 개체 및 펌프설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동 △△-△△번지 선과 연결되는 주택가 내 골목은 대지 및 사유지 도로로 향후 공사 추진 시 토지사용 승낙 등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안내	건설과 (수용)

3) 상담완료 내역 : 36건

□ 처리 분야별

(단위 : 건)

분야 건수	건축 (재개발)	도로 교통	농지	도시	복지	세무	환경	건의	기타
36	14	3	4	4	5	2	-	1	3

□ 세부 처리내역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옴부즈만
1	1. 8.	- 건축법 적용 관련 【대구 동구 김○○】	- 건축법 적용 여부 및 형평성 이의 제기에 대하여 설명 및 의견제시	건축주택과	박영홍
2	1. 15.	- 한옥 건축 양식을 장려하여 신축 공공 건축물에 적용을 요청 【대구 동구 우○○】	- 옴부즈만이 사항을 검토· 판단 후 대면 상담을 통해 설명	건축주택과	박영홍
3	1. 29	- ○○○○○○○구역 관련법 적용 질의 【대구 수성구 최○○】	- ○○○○○○○ 내 기존시설물 적용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자원순환시설 건축허가 여부, 연구개발특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	도시과	박영홍
4	3. 25.	- 농지 전용 관련 【경북 경산시 박○○】	- 농지 전용 관련 절차 및 법적 내용, 전용 기준 및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 및 상담	건축주택과	박영홍
5	4. 3.	- 긴급생계비 지급 관련 【대구 동구 서○○】	- 긴급생계비 지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지원절차 설명 및 안내	복지정책과	손병찬
6	5. 13.	- 주거지역 도시계획 종상향 건의 【대구 동구 황보○○】	- 종상향은 시장권한이므로 민원내용을 해당부서에서 시청으로 건의하도록 협의	도시과	박영홍
7	5. 20.	- 생계자금 지급 관련 【대구 동구 서○○】	- 생계자금지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 관계부서 확인 후 변동 없이 지급	복지정책과	박영홍

II. 옴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옴부즈만
8	5. 25.	- □□□동 ◇◇◇지구 분양가 관련 【대구 동구 조○○】	- 일반분양 분양가 신청과 승인 과정, 주택조합의 조합원 분양가 결정 과정에 대하여 설명 - 해당 주택조합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 받을 수 있도록 조치	건축주택과	박영홍 신춘복 손병찬
9	6. 10.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관련 【부산 해운대구 김○○】	- 주택법, 협동조합 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내용 설명 및 상담	건축주택과	박영홍
10	6. 24	- ○○○ 단지 내 알뜰 장터 철수 요망 【대구 동구 이○○】	- 알뜰장터는 공동주택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이며 관계 부서 공동주택관리 담당자와 상담하도록 안내	건축주택과	박영홍
11	7. 6.	- 지역단기일자리사업 관련 【대구 동구 김○○】	- 일자리사업 안내 및 신청절차 설명	경제지원과	신춘복
12	7. 15.	- 도로 맨홀 파손 및 침하 복구 요망 【대구 동구 김○○】	- 대상지 도로는 사유지이나 주민통행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당부서 담당자와 협의하여 파손 및 맨홀과 침하되고 있는 주변을 넓게 보수하기로 협의	건설과	박영홍
13	7. 22.	- 금호강 ○○길 가로등 보수 요망 【대구 동구 유○○】	- 야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 하고 있는 만큼 일부 구간 가로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조속히 보수 할 수 있도록 조치	재무과	손병찬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옴부즈만
14	7. 29.	- □□동 소재 농지에 대한 인접농지 피해 호소 【대구 동구 최○○】	- 이해관계 농가지주를 만나 10~11월경 장비를 동원하여 배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조정· 중재하여 민원인과 합의	경제지원과	신춘복
15	8. 21.	- 아파트 관리주체 선정 관련 입주자 대표회장 횡포 대책 건의 【대구 동구 김○○외 2인】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사본 등 증빙서류 확보 후 담당부서 관리 감독 하에 행정처분 검토 등 의견제시 -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 등 의견제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건축주택과	신춘복 손병찬
16	8. 24.	- 무단형질 변경 원상복구 관련 【대구 동구 조○○】	- 무단형질변경 후 원상복구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하여 해당부서 담당자에게 설명 후 당사자 간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도록 중재 조치 -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 적 조치에 대하여 설명	도시과	손병찬
17	8. 28	- 단독주택 집수리 후 하자보수 미이행 【대구 동구 최○○】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 부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옴부즈만 자체상담 완료	손병찬
18	8. 28.	- 형편이 어려운 할머니 지원 요청 【대구 동구 ○○○○ 사업 참여자 최○○】	- 관계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생활보장과 ○○동 행정복지센터	손병찬
19	9. 2.	- 택배차량 충격으로 건물 파손 피해보상 관련 【대구 동구 최○○】	- 법원판결 사항에 대한 언급은 곤란하며 보험사와 잘 협의 할 수 있도록 안내	옴부즈만 자체상담 완료	손병찬
20	9. 2.	- 빌라 진출입 보차도 (경계석) 확장 요청 【대구 동구 ○○빌라대표】	- 관계부서에 보차도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면적에 따라 점용료가 부과됨을 설명	건설과	손병찬

II. 읍부즈만 운영성과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읍부즈만
21	9. 2.	- 국유지(구거) 불하 관련 문의 【대구 동구 최○○】	- 관계부서 농지담당에게 민원내용에 대하여 직접 설명 드리도록 조치 - 18년 용도 폐지하여 자산 관리공사에 기 통보, 자산 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조 치토록 요구함	경제지원과	손병찬
22	9. 4.	-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방법 이의신청 【대구 동구 서○○】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와 협의하여 민원내용을 은행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	○○동 행정복지센터	박영홍
23	9. 9.	- 공사장 소음피해 조치 요망 【대구 동구 김○○】	- □□□동 ◇◇◇공사현장 소음 피해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조치 하도록 요구 및 현장 사무실에 조치요청	건축주택과	손병찬
24	9. 18.	- 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요망 【대구 동구 이○○ 외】	- 시공사와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중재 요구 및 주민들과도 합의 하도록 설득	건축주택과	박영홍
25	9. 18.	- 도로용도폐지 및 불법 쓰레기 방치 조치 요망 【대구 동구 임○○】	- 관련부서 국공유지, 용도폐지 담당자와 합동 회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조치 하였으며 나대지 위 불법 쓰레기 적재에 대하여 관련 부서 담당자와 현장내용 확인을 통해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협의	건설과 환경녹색과	박영홍
26	9. 18.	- 공사장 소음피해 조치 요망 【대구 동구 김○○】	- 담당자와 협의 결과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 예정이며 법적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행정지도 및 특별히 관리 감독할 것을 요청	환경녹색과	박영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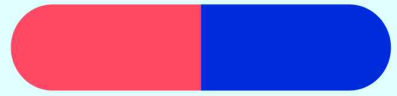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읍부즈만
27	9. 25.	- ◇◇◇◇◇◇~□□동 연결 도로공사로 인접지역 주민피해 대책 요망 【대구 동구 김○○】	- 공사발주처인 ◎◎사업소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사와 원만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중재	건축주택과	박영홍
28	10. 14.	- 화재로 반파된 폐공가 조치 요망 【대구 동구 박○○】	-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빈집 폐공가 정비 사업에 반영하여 주택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안내 및 주관부서 공공시설물에도 내년 사업에 포함되도록 협의	건축주택과	박영홍
29	10. 26.	- 아파트관리비 공동전기 요금 등 과다 징수 개선요구 【대구 동구 이○○】	-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운영 되고 있으며 관리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건축주택과	신춘복
30	11. 2.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성토 지원 요구 【대구 동구 최○○】	- □□동 소재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畓)임. 저지대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관련부서에 향후 구 자체 사업 시행 시 나오는 여토가 있을 시 지원 검토 및 답변 통지 예정	도시과	신춘복
31	11. 13.	- 농사용 창고 신축 관련 【대구 북구 황○○】	- 현재 사용 중인 경관녹지 점용허가가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 곤란할 경우 농기계 출입 등 농로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거나, - 현재 복개되어 도로처럼 사용되고 있는 구거 부지를 점용허가 받도록 하여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 및 안내	경제지원과	손병찬

II. 읍부즈만 운영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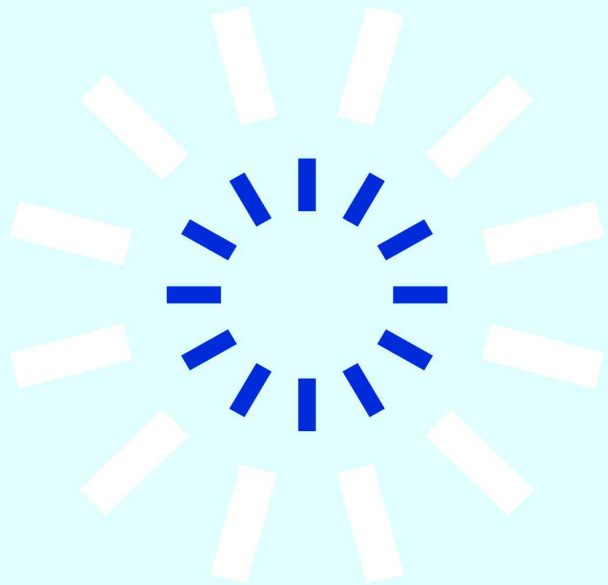
연번	접수일	민원내용(신청인)	처리결과	담당부서	읍부즈만
32	11. 20.	- □□□구역 ○○○아파트 오수처리 관련 【대구 동구 황○○】	- 구청에서 오수차집관로 직접연결 요구 시 과도한 기부채납 (관로개설 후)이 될 수 있으므로 신규 오수차집관로 매설비용과 정화조 설치비용을 정확하게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할 경우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 조합장을 설득하여 설계변경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안내 및 설명	건축주택과	손병찬
33	11. 23.	- 아파트 세대내 안방 화장실 벽체타일 균열과 문틀 뒤틀림 해소 【대구 동구 김○○】	- 건설사측은 하사보수기간이 2년 지나 수리가 어려우며 단순한 벽체타일 균열의 문제인지 하중구조변경의 문제인지 점검 요구	건축주택과	신춘복
34	12. 7.	- 인접빌라 신축에 따른 피해 조치결과 확인 요청 【대구 동구 이○○】	- 관계부서 의견과 조치결과를 전화 회신	건축주택과	신춘복
35	12. 16.	-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대구 동구 이○○】	- 관계부서 담당 및 담당자와 협의 조정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중재 및 해결	세무과	박영홍
36	12. 30.	- 취득세 납부에 대한 이의제기 【대구 동구 정○○】	- 관계부서 담당 및 담당자와 협의결과 계약서와 등기부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단순 법무사의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불 또는 대체는 불가능함을 설명 및 이해 설득	세무과	박영홍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읍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 — Ⅲ. 주요 처리사례



1

의견표명(4건)

1)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조치 요망

□ 신청취지

신청인 서○○은 동구 □□동 △△△-△ 외 3필지에 ○○○시설(○○○○시설)을 신축하고자 2020.2.10.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신축건물 진출입을 위한 보차도 점용과 관련하여 건설과와 협의 과정에서 보차도 점용에 관련되는 □□동 ◇◇◇-◇ 수도용지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여 건축주택과에서 관련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 협의한 결과 독점적인 사용허가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를 사유로 건축허가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공부 확인 결과 동구 □□동 ◇◇◇-◇번지는 지목이 수도용지이며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 재산으로서 과거 ㉠㉠천 본류에 건설한 ▽▽댐 축조(1979~1982) 당시 필요한 하천구역과 ▽▽댐 근무자 사택 축조를 위해 수도용지로 편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댐 앞 도로(☆☆로) 건설로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로 상수도 배관망도 확인 결과 현재는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2) 현재는 인근 건물 및 식당 진출입을 위한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인 대로△류△호선 및 중로 ◎류-◎◎호선이 교차하는 삼거리 내에 위치한 부지로서 향후에도 도로부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3) 위 수도용지인 동구 □□동 ◇◇◇-◇번지 사용과 관련하여 관리부서인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 확인 결과 상기 부지는 현재도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어 인근 식당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 개인의 건물 진출입을 위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배타적 권리인 독점적 사용허가는 해 줄 수 없다고 하며 현재처럼 여러 사람이 진출입로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 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위 동구 □□동 ◇◇◇-◇번지는 수도용지이지만 확인 결과 현재는 상수도 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고,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개방되어 있어 인근 식당 진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도 도로부지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2) 관리부서인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에서도 위 수도용지에 대하여 특정인을 위한 배타적 권리인 독점적 사용허가는 해 줄 수는 없지만 현재와 같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상기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20. 4. 22.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신: 건축주택과장)

2020. 4. 22.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서○○)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794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본조신설 2010. 2. 4.]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사용·수익허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0. 2. 4., 2015. 1. 20.>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83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 ① 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7. 7., 2019. 7. 2.>
1.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할 재산의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하여 축조하는 경우
 3.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8. 1. 9.>
 5. 제29조제1항제13호·제19호 또는 제23호에 따라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

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
 7. 매각·양여·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 다만,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
 8.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0.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7.> [전문개정 2009. 4. 24.]

제11조(처분 등의 제한)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와 성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14., 2015. 7. 20.>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관(移管)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2. 기존 도로의 확장·축소로 인하여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 관리청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 간에 변경되는 경우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4. 24.]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② 법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4. 7. 7.>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전문개정 2009. 4. 24.]

2) 이축권과 관련한 농지전용 협의 요청

□ 신청취지

상기 정○○는 동구 □□동 △△△-△번지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지에 편입되어 기존의 소유 주택이 철거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3의2 규정에 의거 동구 ☆☆동 ◇◇◇-◇번지에 이축하고자 농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였으나 농지전용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은 법에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며 읍부즈만에 민원을 접수하였음.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 결과 상기 민원인 정○○는 □□□□□□□□□□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되는 동구 □□동 △△△-△번지 소유 주택을 동구 ☆☆동 ◇◇◇-◇번지로 이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단지 조성사업이며, 사업시행자는 □□□□□□공사와 □□□□공사, 사업 위치 및 면적은 대구 동구 □□동 △△△-△ 일원 167,093㎡에 시행 중인 사업임.
- (2) 법령 검토 결과 동구 □□동 △△△-△번지는 공익사업으로 시행 중인 □□□□□□□□□□단지사업 편입용지이며,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3의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3) 이축하고자 하는 동구 ☆☆동 ◇◇◇-◇번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 구역이며, 지목이 전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3의2에 의거 이 위치에 이축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2항제2호에 의거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4)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권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3의2에 의거 가능하지만, 이축하고 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2항제2호에 의거 별도로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5) 다시 말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항 3의2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농지전용이 의제처리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농지전용 허가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건축법시행령」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의거 관련법령에 따른 협의를 거쳐 동의여부를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이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관하여는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할 것임.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농지전용과 관련한 판례(02-07768, 농지전용불허가처분취소청구)에 따르면,
“농지전용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허가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으므로
- (2) 본 민원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재량에 의거 동구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사료되며, 농지전용 불허가시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0. 5. 22.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신: 경제지원과장)

2020. 5. 22.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정○○)

관 계 법 령

《개발제한구역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 마. <생략>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 9. <생략>

② ~ ⑪ <생략>

《농지법령》

■ 「농지법」[시행 2019. 7. 1.] [법률 제16073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1. ~ 5. <생 략>

-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1. ~ 1의2. <생 략>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5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9., 2013. 3. 23.>

■ 「농지법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1. 26., 2013. 3. 23.>
- ② 삭제 <2009. 11. 26.>
- ③ 삭제 <2009. 11. 26.>
- ④ 삭제 <2009. 11. 26.>
-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 6. 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농지법시행규칙」

[시행 2019. 11. 1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 2019. 11. 14., 타법개정]

제26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09. 11. 27., 2012. 7. 18., 2016. 1. 21.>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로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27., 2012. 7. 18.>

《건축법령》

■ 「건축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11조(건축허가)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 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5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09. 6. 9., 2009. 7. 16., 2010. 2. 18., 2010. 3. 9., 2010. 12. 29., 2012. 7. 26., 2012. 12. 12., 2014. 7. 14., 2016. 5. 17., 2017. 1. 26., 2017. 2. 3., 2017. 3. 29.>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 「자연공원법」 제23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4.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6.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산림보호법」 제9조
 10. 「도로법」 제40조 및 제61조
 11.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
 1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13.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14. 「수도법」 제7조 및 제15조
 1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 및 제36조
 16. 「문화재보호법」 제35조
 1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1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제15조
 19. 「농지법」 제32조 및 제34조
 20.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②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 ⑤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를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는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3) 신축 중인 빌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문제

□ 신청취지

상기 민원인 김○○은 이웃한 □□동 △△△-△△번지에 신축 중인 빌라의 외부비계 설치와 부직포 설치로 창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방법 문제와 가람막으로 설치한 부직포가 낡고 헤어져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당초에 약속한 보상(세대 당 00만원씩 0세대 000만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읍부즈만에 민원을 접수하였음.

□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 및 현장 조사결과 동구 □□동 △△△-△△번지에 신축 중인 빌라는 20○○.7.4. 건축허가(건축주 박◇◇)를 득하여 공사를 진행 해 오다가 1층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재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외부비계로 인한 방법 문제와 부직포가 낡고 바람에 날려서 한여름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등 민원인 소유 빌라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많은 생활 불편을 주고 있으며

(2) 공사 착공 당시에 현장관리인(소장) 박◇◇이 민원인 소유 빌라(0세대)의 세대 당 00만원씩 총 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현장관리인은 시공을 포기하고 그만 둔 상태이며 건축주와도 연락이 두절되어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임.

※ 공사 착공 시에 20○○.7.20. ~ 9.15.까지 약 2개월간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공사 기간 중 불편에 대하여 ○○빌 201호, 301호, 401호 각 세대별 00만원씩 총 000만원의 보상액을 20○○.8.31.까지 지불하겠다고 약서 작성

(3) 건축감리원 오☆☆ 현재 건축주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건축을 포기한 것 같다고 하면서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주를 고발 조치하고 관련부서에 감리포기원을 제출하겠다고 함.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본 민원원이 요구한 피해 보상에 대하여는 당초 지급 약속한 현장관리인의 공사 포기 및 건축주의 연락 두절 등으로 중재 및 합의 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신축 건물의 경매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가 결정 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와 협의하여 피해보상을 받도록 하거나, 현 건축주와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절차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며
- (2) 상기 빌라 신축공사 중단에 따른 외부비계 및 부직포 등으로 인한 안전과 생활불편 민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하여 관련법령에 맞게 적법하게 관리 및 조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20. 7. 13. 고충민원 처리협조 요청(수신: 건축주택과장)

2020. 7. 13.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김○○)

4)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관련

□ 신청취지

상기 고충민원인 임○○이 부인 이◇◇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동구 □□동 △△△번지(지목 전, 홍◇◇ 외 14인 공동소유) 지분 일부를 매각하고자 영농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동구청 관련부서에 문의 하였으나, 농지 내의 비닐하우스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 본인이 설치하지도 않은 비닐하우스로 인하여 토지 매매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결과 당초에 공동소유자 홍◇◇이 설치한 비닐하우스가 ㉠동이 있었으나 동구청의 도로개설 공사(▽▽▽류 동000호선)로 인하여 ㉡동이 편입되어 철거된다고 하니까 남은 ㉢동도 이번 기회에 본인 부담 없이 공사 시에 시공업체가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함.
- (2) 이와 같이 합의된 상태에서 2020년 8월 상기 토지 일부를 백㉣이 매수할 때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당연히 철거될 것으로 보고 2020. 12. 31.까지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받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고 하며
- (3) 이후 도로공사 과정에서 홍◇◇이 당초 철거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편입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동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시공사에 요구하여 현재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2020. 12. 9. 현장 조사 결과 비닐하우스 ㉠동 중 ㉢동은 철거되었고 ㉡동은 존치되어 있으며,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화훼농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결론(조치의견) : 의견표명

-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토지에서 공동소유자 1인이 농지 매수 시에 “농지로의 복구계획서”에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겠다고 하였더라도 당초 설치한 사람이 농사용으로 다시 적법하게 사용한다면 철거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 되므로
- (2) 관련부서에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여 농사용으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면 당초 제출한 비닐하우스 철거와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20. 12. 24.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신: 경제지원과장)

2020. 12. 24.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임○○)

2

시정권고(2건)

1) 도시계획도로 폐지에 따른 대지경계 측량 수수료 요청

□ 신청취지

상기 문○○은 2000년도에 동구 □□동 △△△-△에 건물 신축 시 대지 일부가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어 경계측량을 하여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만큼 남겨놓고 건축선을 후퇴시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최근에 확인 결과 도시계획도로가 2017년도에 폐지되었다고 함.

※ 도시계획시설(소로 ◎류 동 ○○○호선)
시설결정일 1995.1.9. 시설폐지일 2017.5.30.

이 경우 과거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다면 건물 신축 당시 대지경계측량을 한 번만 했으면 될 것이므로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남겨둔 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 수수료 지급 또는 대지경계측량 요구와 도시계획도로 지정 및 폐지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현행 법령으로 배상이 불가능하면 향후 법령이나 제도 개선을 통하여 조치 요구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 및 조사결과 동구 □□동 △△△-△ 번지선 도시계획시설(◎◎◎류 동 ◇◇◇호선)는 도시계획 시설 중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서 2017년 폐지되었으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 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는 구 도시계획법(시행 2000.7.1. 법률 제6243호) 제 50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었던 사항임.

- (3) 민원인이 건물을 신축한 2000년 당시에는 도시계획시설(○○○류 동 ◇◇◇호선)이 해제되기 전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유효했던 것으로 보여 지며, 구 도시계획법 제5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부지를 피하기 위한 경계측량은 ‘개발행위(건축행위)’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구 도시계획법에서도 별도의 보상 또는 손해배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 (4) 상기 경계측량 수수료 요구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수수료 등)의 측량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5) 도시계획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 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한 것으로서 재량행위라 할 것이므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는 이상 그 도시계획 결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임

□ 결론(조치의견) : 시정권고

- (1)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법령위반이나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없을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아울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상기 민원에 대하여도 현행 법령상 손해배상 및 측량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2) 다만 상기와 같이 도시계획 시설결정(도시계획도로 결정 및 폐지)에 따른 대지경계 중복 측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향후 법령 개정 건의 또는 시혜적 행정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2020. 8. 24.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신: 도시과장, 토지정보과장)

2020. 8. 24.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문○○)

관 계 법 령

■ (구)「도시계획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5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토지 또는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단계별집행계획에서 제1단계집행계획(段階別執行計劃)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段階別執行計劃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第46條第3項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그 시행예정일 3월전까지 무상으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의 비용부담·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 국토계획법)」

[시행 2020. 7. 30.]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1. 가설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3.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제5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2호, 2020. 2. 4., 타법개정]

제106조(수수료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7.>
1. 제14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등의 복제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2. 제15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 기본측량기록 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간행한 지도 등의 활용 신청
 3.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 간행의 심사 신청
 4. 제16조 또는 제21조에 따른 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신청
 5.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요청
 6. 제2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또는 그 등본의 발급 신청
 7. 제33조에 따른 수로조사성과의 심사 신청
 8. 제36조에 따른 수로도서지의 복제 등의 승인 신청
 9.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신청
 10.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1.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 신청
 12. 제54조제3항에 따른 수로사업등록증 및 수로사업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
 13. 제75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
 14.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신청
 - 14의2. 제76조의4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 또는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
 16. 제9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신청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신청

18.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④ 지적소관청이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경우에는 그 조사·측량에 들어간 비용을 제2항에 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제82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등록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경감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7. 17.>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자가 공공측량시행자인 경우

2.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유사한 제작물을 발행하는 경우

3. 제1항제8호의 신청자가 우리나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한 외국정부인 경우

4. 제1항제13호의 신청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인 경우

5. 제1항제14호의2 및 제15호의 신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 ○○교 현 위치 설치요청

□ 신청취지

상기 고충민원인 이○○은 현재 동구청에서 설계 중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천 정비사업과 관련, 현장에서 담당자로부터 하천의 통수능력 확보를 위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 높이를 1m 정도 높여야 하며 교량 위치도 지금보다 하류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들의 이용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현 위치에 같은 높이로 신설 교량을 설치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제기.

□ 사실관계 및 판단

- (1) 위 신청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확인결과 강우강도 변화에 따른 침수 등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현재 동구청에서 ㉠㉠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기술 검토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2020. 8. 7.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임
- (2) 현장 조사 결과 ○○교 교량을 현재보다 1m 정도 들어 올릴 경우 교량 접속부 단차 발생으로 기존 사용자들의 진·출입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며, 신설교량을 하류 쪽으로 이동하여 설치할 경우 상가 주 출입로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상가 소유자 상호 간에 호·불호로 인한 민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3) 상기 민원인은 기존 교량 철거 후 현 위치에 신설 교량을 설치 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기존 교량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며, 그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임.

□ 결론(조치의견) : 시정권고

- (1) 홍수빈도 및 계획홍수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필요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추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공사 기간 동안 기존 교량을 철거한 후 가설교량이 없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 (2) 홍수빈도 및 계획홍수량 분석 및 검토 결과 하천 통수능력이 부족할 경우 하천 건너편 기존교량 접속부 하천부지를 약 2m 정도 절토하여 통수능을 확보하거나, 교량부분 하도 일부를 낮추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 (3) 부득이하게 공사기간이 길어져서 가설교량이 필요할 경우 ◎◎교 상류 100m 지점의 보를 활용하여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이므로 기존 위치에 ◎◎교를 신설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020. 9. 9.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보(수신: 건설과장)

2020. 9. 9. 고충민원 처리결과 알림(수신: 이○○)

3

합의 · 조정(1건)

1) ○○○○시설 신축허가 관련 고충 민원

□ 신청취지

동구 □□동 △△△-△번지 상 건축허가에 대하여 ○○○시설(○○○○시설)이 건립될 경우 집값 하락, 교통 혼잡, 주차난, 환경문제, 인근주택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인근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의 정서문제 등의 이유로 신축허가를 반대함

□ 사실관계 및 판단

※ ○○○시설 건축허가 신청

- 위치 : □□동 △△△-△번지 ○ 건축허가 신청: '19. 11. 29.
-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용도: ○○○시설(○○○○시설)

- (1) 2019. 11. 29. ○○○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주민 임시총회 결과 다른 시설(빌라) 등은 수용가능하나 ○○○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반대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는 적법하나 건축허가 되어 신축 될 경우 인근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축 반대 다수인 민원에 따라 관계부서 (건축주택과)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함.

- (2) 2020. 7. 1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조정 결과 건축주는 지역발전 방안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옴부즈만을 통해 건축주와 주민대표 간 중재토록 권고함

□ 결론(조치의견) : 합의조정

2020. 9. 9. 고충민원 합의 조정 통보(수신: 건축주택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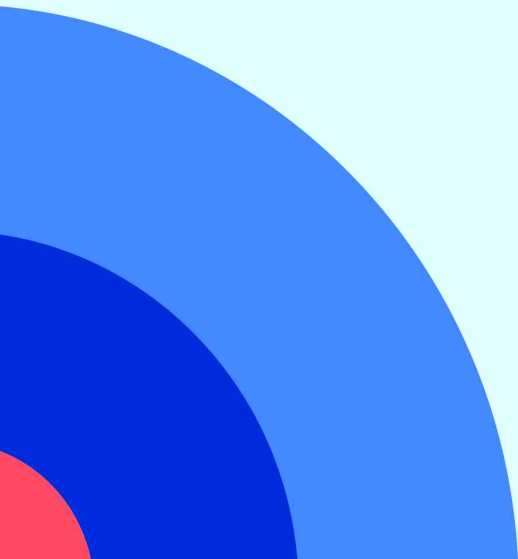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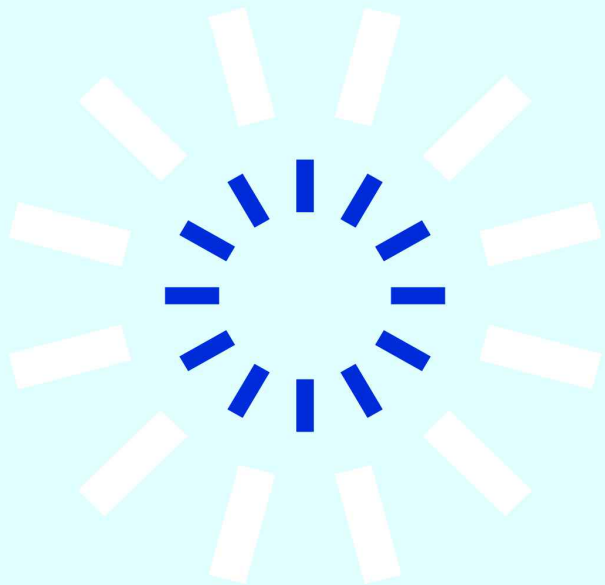
☞ 주민들의 불편함,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였으며 당사자 간 화약서 서명·날인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IV. 옴부즈만 홍보 및 활동



1

옴부즈만 홍보 실적

1) 언론보도

연번	내 용	사 진
1	- 일시 : 2020. 3. 26. - 언론사 : 경상매일신문 - 제 목 : 대구 동구 옴부즈만, 작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 본문 요약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은 지난 20일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 옴부즈만 위원들은 각종 컨설팅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지방 옴부즈만의 교류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은 지난 20일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2	- 일시 : 2020. 3. 26. - 언론사 : 국제뉴스 - 제 목 : 대구시 동구청 옴부즈만,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 본문 요약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은 지난 20일 2019년 운영상황 보고서를 발간,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옴부즈만은 행정 기관과 구민들의 가교역할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구민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은 지난 20일 '2019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였다.

연번	내 용	사 진
3	- 일시 : 2020. 9. 3. - 언론사 : 국제뉴스 - 제 목 : 대구시 동구청, 고충민원 해결에 옴부즈만이 앞장서다. - 본문 요약 -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 행정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작년 7월 출범 이후 70여건의 고충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나가 면서 구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	- 일시 : 2020. 9. 4. - 언론사 : 열린뉴스통신 - 제 목 : 동구 동구청,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만 제도 운영 - 본문 요약 - 대구광역시 동구청은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옴부즈만의 직무는 △ 반복·고질민원 조사, 조정 △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민원사항 조사, 처리 △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 배기철 동구청장은 “옴부즈만 운영이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멋진 동구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언제든지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2) 방송 인터뷰

연번	내 용	사 진
1	• 일시 : 2020. 9. 12. • 언론사 : KTV 국민방송 • 프로그램명 : 우리 동네 개선문* * 국민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 과정을 방송하며, 생활 속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해 나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소개 • 제 목 : 고충민원 해결 도우미 '동구청 옴부즈만' • 본문 요약 - 2019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동구는 주민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동구 신천동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불법 주차 관련 고충민원 해결 사례 소개 - 옴부즈만 위원 인터뷰 및 제도 홍보 - 옴부즈만 제도 구성 이유 및 운영 성과 - 옴부즈만 제도 추진 방향 ▷ 주민 누구나 방문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애로사항을 듣고 격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열린 옴부즈만 운영 ▷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반복·고질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여 행정력 낭비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도 옴부즈만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	  

연번	내 용	사 진
1	<우수사례> 신천4동 재개발 현장 옆에 위치한 ○○○ 빌라 앞 소방도로에 탄력봉을 설치하도록 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빌라 진출입 불편민원 해결 <상세내용> 신천4동 재개발 현장 주변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공사장 주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빌라 출입구를 가로막아 차량 출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 - 과거 관급공사의 공사감독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살려 현장 소장을 직접 만나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 공사 가급적 지양하도록 하고, 탄력봉을 활용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3개월 동안 민원을 제기해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덕분에 공휴일에도 조용하고 주차 문제도 해결 되었다는 감사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보람을 느꼈음.	 감사메세지 내용 안녕하세요~ 신천동○○○~▲번지입니다. 3개월간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었는데, 힘 써 주신 덕분에 이제는 공휴일에도 조용하고~ 주차도 잘 정리 되었습니다. 너무 잘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3)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 대상기간 : 2019. 7. 1. ~ 2020. 4. 30. 적극행정 추진실적
- 일 시 : 2020. 6. 19.(금)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자료(일부)

서로의 도량 잇고 동구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회 옴부즈만 운영 감사실	서로의 도량 잇고 동구 CONTENTS 01 옴부즈만이란? 02 사례 추진 배경 03 사례 추진 내용 04 사례 추진 결과
서로의 도량 잇고 동구 01 옴부즈만이란? ●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현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	서로의 도량 잇고 동구 02 사례 추진 배경 ● 행정의 복잡화·다양화·전문화 경향으로 확대된 행정 재량권에 의한 국민 권리침해 가능성 증대 ● 정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제기 등 행정력 손실 ● 중립적인 견지에서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행정기관간 완충 역할 및 상호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동일 반복민원으로 인한 행정낭비 방지도 일조할 수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자료(일부)

03 사례 추진 과정

서노도부 엠포드

- 근거 법령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추진 경과
 - ▷ 2018. 10. :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 ▷ 2018. 12.~2019. 1. :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 ▷ 2019. 3~ 4. : 옴부즈만 후보자 위촉 및 의회 동의
 - ▷ 2019. 7. 1. : 옴부즈만 위원 위촉(3명)
 - ▷ 2019. 7. 15. : 옴부즈만 출범
 - ▷ 2020. 2. 20. : 19년 운영상황 보고서 제출



04 사례 추진 결과

서노도부 엠포드

- 중점 추진사항
 - ▷ 민복·고질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 ▷ 주민들의 권익보호·구제와 관련된 민원 조사·처리
 - ▷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
 - ▷ 규정건의

● 추진성과

- ▷ 중 47건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2019.7.~2020.6.)

▷ 접수현황

구분(건)	직접조사	여접	취하	상담완료	비고
47	13	15	-	19	

▷ 접수분야

구분(건)	건축	농림	세무	환경	도로	기타	구정건역
47	15	6	1	4	2	15	4

04 사례 추진 결과

서노도부 엠포드

● 추진성과

▷ 직접조사 처리현황

합계(건)	서장권고	의견표명	압박조정	기각	선명중
13	2	5	3	1	2

● 주요성과

- ▷ 농지 매수권 설치에 따른 인접농지 피해 해결요청에 따라 인접 농지 소유주들과 협의하여 제방 축소 및 내년부터 '공적금지' 조치를 취할 것과, 신정인 농지에 매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받음.

04 사례 추진 결과

서노도부 엠포드

● 주요성과

- ▷ 저출생제한·재난안전 교육 강화 건의에 따라 향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감다하겠다는 안전중심과 답변받은

● 향후계획

- ▷ 민원 만족도 향상 및 구정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
- ▷ 동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



2

옴부즈만 활동 실적

활 동 사 진



【옴부즈만 민원 조정·중재】



【옴부즈만, 담당 공무원 협의】

활 동 사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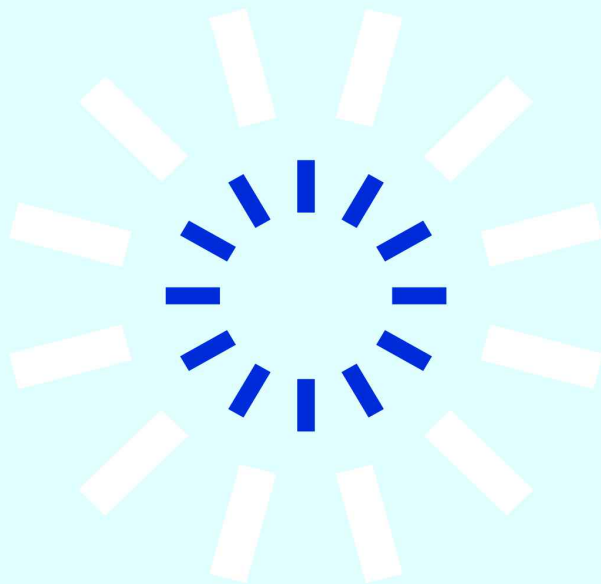
【 옴부즈만 민원상담 】



2020년
대구광역시 동구 읍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서



V. 부록



1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8. 11. 26.)

(제정) 2018.11.26 조례 제1248호

(일부개정) 2020.06.01 조례 제131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호 신뢰하는 공직 및 사회풍토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옴부즈만”이란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등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와 고충민원의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고충민원”이란 구 및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만 구성·운영 등

제3조(옴부즈만 구성) ①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구성하되,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V. 부록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법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4조(대표옴부즈만 등)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옴부즈만을 대표한다.

② 부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지명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6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옴부즈만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 하였을 경우
4. 심신상의 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제8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만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옴부즈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옴부즈만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옴부즈만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직무) ① 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공직 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제도개선 권고
 2. 주민들의 권익 보호·구제와 관련된 사항과 민원(고충민원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포함)에 대한 조사·처리
 3.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조정·중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위임·의뢰하는 사안의 조사·처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6.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

제11조(회의 운영) 옴부즈만은 상호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회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옴부즈만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V. 부록

3. 인·허가 등의 신청내용 및 시기, 관련 처분 등(사실행위를 포함)의 시기와 그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인과의 관계
5.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6. 다수인 민원의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2. 고충민원의 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3.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고충민원 조사 방법)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구의 관련 부서에 그 취지를 통보한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 또는 관련 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은 이를 관련 부서에 넘기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만은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 권고를 하기 전에 소속행정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기관 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합의권고 및 조정)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한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감사 요구, 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8조(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지) 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고충신청인에게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일 이내에 고충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4장 옴부즈만의 지원 등

제20조(조치결과의 통지 등)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등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248호 2018.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13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1. 30.)

(제정) 2019.01.30 규칙 제823호

(일부개정) 2020.06.01 규칙 제8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옴부즈만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구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2. 관할 사업소와 동 행정복지센터

제3조(대표옴부즈만) 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옴부즈만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대표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옴부즈만 활동실적을 2개월 이내에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 및 권한이 아닌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의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종결된 사항. 다만, 종결된 사항일지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으로 처리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무원 의제 및 보안대책) ① 옴부즈만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② 옴부즈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에 따르며,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신분증

표시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으로 신청기간이 지났을 경우
2. 고충민원에 관계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경우

제9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관계 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원본이나 사본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계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조례 제17조에 따른 시정 또는 감사요구, 권고, 의견 표명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문서관리) ① 옴부즈만은 관계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관관리를 위해 옴부즈만 사무실에 비밀문서 보관함을 둔다.

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 등을 완료한 경우 관계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실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계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걸릴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②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을 통하여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접수된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상황의 공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다음

V. 부록

각 호를 포함한 운영상황에 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구 공보에 공표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
2.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
3. 옴부즈만의 시정·감사요구·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조치결과 통보)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시정·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지급) 조례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옴부즈만 활동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17조(공인) 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 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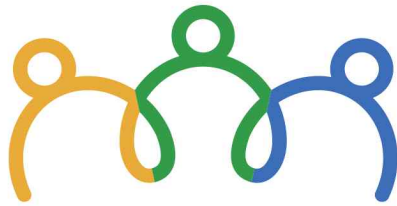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23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45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들의 권익보호 · 구제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Dong-gu, Daegu Metropolitan City

41185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207 동구청 2층 옴부즈만실

(월, 수, 금 09:30~17:30 운영)

Tel. 053-662-4351~4353 Fax. 053-662-2139